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3. 17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4년 3월 17일

다. 상정일자 : 1994년 3월 17일

제2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文忠實)

가. 제안사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 2)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코자 함.(안 제3조)
-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함.(안 제7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강성희)

에너지 이용관리법(1991. 12. 14), 동법시행령(1992. 7. 1) 및 시행규칙(1992. 7. 9)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의 내용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1993. 2. 8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 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1994년 2월 24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1. 개 정 사 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구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코자 함. (안 제3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 가.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의견조회결과 : 별도의견 제출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대상) ① 에너지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신고등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에너지관리자 채용신고등 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3.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하는 등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조업의 휴업·폐업신고등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③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시공업의 휴업·폐업 신고등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완료한 경우 그 설치·시공기록을 작성하는 등 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④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해임한 경우 그 신고를 하는등 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물은 전부 또는 구역별로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해당구역의 건축물 관리를 맡고 있을 때에는 그 임차인)로서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제3조(부과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규정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8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내(은행납입 경우에는 20일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구청장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조사·확인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 태 료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4 회 이상
1. 에너지 사용자 (지정 에너지 관리 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 생산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20조 제1항	20	50	100	300
	나. 에너지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23조 제2항	30	70	150	300
	다.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설치 및 개폐상황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21조	20	50	100	300
2.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가.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35조	20	50	100	300
	나.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7조 제1항	20	50	100	300
3.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가. 시공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법 제46조 제2항	20	50	100	300
	나.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완료한 경우 그 설치·시공 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2조 제2항	20	50	100	300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 태 료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4 회 이상
4. 검사대상 기기설치 자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해임·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법 제49조 제3항	30	70	150	300
	나. 정기적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운전· 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 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7조 제3항	20	50	100	300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위반 회수 위반 온도 (℃)	과 태 료			비고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이상	
5. 냉·난 방 온도 제한 대 상자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의 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 였을 때	법 제31조 제1항	1	60	120	180	
			2	70	140	210	
			3	80	160	240	
			4	90	180	270	
			5	100	200	300	

- ※ 1) 과태료 부과횟수의 산정: 1회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2회위반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횟수의 누증 계산을 한다.
- 2) 위반행위의 경합: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p> <p>1. 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한다.</p> <p>제2조(과태료부과대상) ① 에너지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신고등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p> <p>2. 에너지관리자 채용신고등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3.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하는 등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법 개정으로 “신설”</p>	<p>..... 한다.</p> <p>제2조(과태료부과대상) ① 에너지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신고등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p> <p>2. 에너지관리자 채용신고등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3.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을 기록하는 등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2.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p>	<p>①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 제조업의 휴업·폐업신고등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2.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등 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법 개정으로 “신설”</p>	<p>② 특정 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 시공업의 휴업·폐업 신고등 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2. 특정열기자재의 설치·시공 기록을 작성하는 등 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3.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위반자</p>	<p>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 검사대상기기조종사를 채용·해임한 경우 그</p>		

현행	개정(안)
<p>법 개정으로 “신설”</p> <p>법 개정으로 “신설”</p> <p>제3조(부과기준) 1.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표금액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신고지연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 별표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p> <p>2.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과실·기타정상 참작하고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다.</p> <p>제4조(부과징수) 1. 관계공무원(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사용자등의 위법사실을 조사·확인 하였을 때는 자인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p> <p>2.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통지·납부) 1.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금액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p>	<p>신고를 하는등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p> <p>2.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등 법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⑤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물을 전부 또는 구역별로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해당구역의 건축물 관리를 맡고 있을 때는 그 임차인)로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p> <p>제3조(부과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p> <p>제4조(과태료처분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규정의 과태료는 납입고지한날로부터 15일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조항(신설)</p>	<p>제5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조항(신설)</p>	<p>제6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p>
<p>제6조(이의신청) 1. 제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7조(이의신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비치장부)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p>
<p>조항(신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조항(신설)</p>	
<p>부칙</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로 조사·확인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